### 2023년 수해 피해 지원 관련 구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11. 9.

제 출 자 : 서구청장

### 1. 제안이유

○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구세)를 감면하여 사망자·유가족의 실질적인 납세 부 담을 덜어주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감면대상자

- 1) 수해 피해로 인한 사망자(「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른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자를 말함. 이하 "사망자"라 함)
- 2)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이하 "유가족" 이라 함)
- 나. 감면세목: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 다. 세목별 감면내역('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한함)

- 1)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 2)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 3. 기타사항

-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 5.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7. 관련공문 : 붙임

- (1)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9476(2023.7.18.)
- (2)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9597(2023.7.20.)

# 붙임 1 관련공문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9476(2023.7.18.)]** 

# 집중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제 지원 방안

◇ 중부지방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 지방세 부담 완화 방안 안내

- ※ 해당 기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실시여부 기한 등을 정함(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징수유예**) 재산세<sup>\*</sup>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 가능(지방세징수법 제25조)
  - \* 7월 중 고지된 주택 재산세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이 피해 규모 등 검토하여 징수 유예 등 결정하고, 필요시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에 따른 감면도 검토하도록 안내
  - \*\* 징수유예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기한연장)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 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 기한연장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 연장, 최대 1년까지 1회 추가연장 가능
- (체납처분<sup>\*</sup>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가능(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

### □ 지방세 감면 실시 독려

- (대체취득시 지방세 면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멸실·파손된 자산\*의 대체취득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지특법 제92조) \*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
- (자치단체 감면)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 기타 지방세제 지원 방안

○ (지방세외수입) 세외수입 성격별로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하거 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지원

< 세외수입 성격별 지원 내용 >

성격	지원내용	지원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17조, 「동법 시행령」제14~16조	
과태료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동법 시행령」제7조의2~4		
그 외 부과금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 (예) 「공유재산법」, 「축산법」 등		

○ (세무조사) 수해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치 단체 장의 직권 등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가능(지방세기본법 제83조)

#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활용 권고
- **피해주민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

###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9597(2023.7.20.)]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全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워 하고자 함

### ① 추진 배경

○ '23. 7. 9.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23.7.19.)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

## ②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

### ● 지원 근거 및 방식

○ **(법규정)**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 §4④)

- (지원방식) 全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 ※ '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 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

### 2 감면 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 ❸ 감면 내용

- 사망자·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sup>1)</sup>,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sup>2)</sup>
  - ┌ 1)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 └ 2)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u>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u>

세 목		부과대상	납기	소관 지자체
1	주 민 세 개 인 분 <sup>*</sup>	• 사망자·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특광역시, 시·군
	자동차세 소 유 분	•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특광역시, 시·군
	재 산 세	•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01 001	시·군·구
2	지역자원 시 설 세*	• 사망자·유가족 * 소방분 限	7월, 9월	특·광역시, 도
3	취 득 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	특·광역시, 도

-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③ 협조사항



- (개발원) 사망자·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旣부과·부과예정 **납세지** 관할 지자체<sup>\*</sup>에 대상자 내역 통보
  - \* (정기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취득세)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
- (지자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
  \* ,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

- \*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旣부과된 지방세는 감액·환급 조치
- ⇒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
- ※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

# 붙임 2 관계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략)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⑥ (생략)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⑧ ~ ⑨ (생략)

###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 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 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